

日本の 放射線 障害防止法 施行規則 및 關係告示 改正條文

1991년 11월 15일에 公示된 放射線 障害防止法 施行規則 및 關係告示의 改正 등의 概要는 앞의 科學技術庁 原子力安全局 放射線安全課의 解説에서 잘 이해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參考삼아 同日 의 官報 제778號에 告示된 改正點을 삽입한 改正後의 條文을 아래에 게재합니다. (밑줄이 改正部分). 다만 樣式 二十一의 四(제39條 第3項關係) 1. 放射性管理狀況報告書(使用者)는 「概要」에 나타나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또한 同, 2. 放射線管理狀況報告書(販賣業者)와 3. 同(廢棄業者) 그 밖의 몇 군데 지면관계로 생략합니다. 施行規則과 告示의 順序로 게재합니다.

放射性同位元素 등에 의한 放射線障害防止에 관한 法律施行規則

(變更許可를 요하지 아니한 輕微한 變更)

제5조의 2 法 제10조 2항 단서의 總理府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變更은 다음 各號에 게시한 것으로 한다.

(中 略)

(5) 使用施設, 貯藏施設 또는 廢棄施設의 폐지

(6) 使用의 방법 또는 使用施設, 貯藏, 施設 내지 廢棄施設의 위치, 구조 내지 설비의 變更으로 長官이 定하는 것

(使用의 届出)

제9조 法 제3조 2 第1항의 規定에 의해 總理府令으로 定하는 사항은 다음에 게시한 것으로 한다.

(中 略)

3. 앞 項의 届出書에는 令제4조 3항의 規定에 의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 予定使用開始時期 및 予定使用期間을 記載한 書面

(以下 略)

(届出書의 提出部數 등)

제12조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의 届出書의 제출부수는 각각 正本 1通 및 副本 3通으로 한다. 다만, 副本 3通 중 2通에 대하여는, 제9조 제3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規定한 서류를 첨가할 필요는 없다.

2. 앞 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長官이 定하는 工場 또는 事業所에 관한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의 届出書의 제출부수는 각각 正本 1通 및 副本 4通으로 한다. 다만, 副本 4通 중 2通에 대하여는, 제9조 제3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規定한 書類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以下 略)

(測定)

제20조 法 제20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測定은 다음에 定하는 바에 의해 行한다.

(中 略)

라. 表示付 放射性同位元素, 裝備機器와 관계되는 放射線量의 測定은 該當機器에 의한 放射線障害의 우려가 있을 시에 行할 것.

(以下 略)

(放射線障害 予防規定)

제21조 法제21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放射線障害 予防規定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中 略)

(1) 의 4 放射線施設의 維持 및 管理에 관한 것.

(1)의 5 放射線施設(届出使用者가 密封된 放射性同位元素의 사용 내지 바뀌 채움, 또는 密封된 放射性同位元素 등의 廢棄를 할 경우는, 管理區域)의 點檢에 관한 것.

(2) 放射性同位元素 내지 放射線發生裝置의 사용에 관한 것.

(以下 略)

(教育訓練)

제21조의 2 法제22조의 規定에 의한 教育 및 訓練은, 다음 各號에서 定한 바에 의한다.

(1) 管理區域에 出入하는 자 또는 取扱業務에 종사하는 자에게, 다음 號에서 제5號까지 정한 바에 의해, 教育 및 訓練을 실시한 것.

(2) 放射線業務從事者에 대한 教育 및 訓練은, 처음 管理區域으로 出入하기 前 내지 管理區域에 出入한 後에 있어서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期間마다 實施하여야만 한다.

(3) 取扱業務에 종사하는 자로서 管理區域에 출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教育 및 訓練은, 取扱等 業務를 개시하기 前 내지 取扱等 業務를 개시한 後에 있어서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期間마다 實施하여야 한다.

(以下 略)

(記帳)

제24조 法제25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해 使用者, 販賣業者 또는 廢棄業者가 갖추어야할 帳簿에 記載

하여야 할 事項의 細目은, 다음 各號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使用者에 관하여는, 다음에 의한 것으로 한다.

가. 使用에 있어서의 放射性同位元素의 種類 및 數量(表示付 放射性同位元素 裝備機器(가스크로마트그래프用 엘렉트론·캐프차·디텍터에 한함)에 관한 것은 제외함. 다 또는 라에 있어서도 같음. 그 밖의 表示付 放射性同位元素 裝備機器에 있어서는 該當機器의 各稱 및 機構 確認의 番號)

(中 略)

마. 保管에 관한 放射性同位元素의 種類 및 數量(表示付 放射性同位元素 裝備機器에 있어서는 該當機器의 各稱 및 機構 確認의 番號. 제2號 가에 있어서도 같음.)

(中 略)

파. 放射線施設(届出使用者가 密封된 放射性同位元素의 使用 내지 바뀌 채움을 하거나, 또는 密封된 放射性同位元素 등의 廢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管理區域의 點檢의 實施年月日, 結果 및 이에 따른 配置의 내용 내지 點檢을 행한 자의 姓名

(中 略)

(2) 販賣業者에 관하여는, 다음에 의한 것으로 한다.

(中 略)

라. 前號 마에서 사까지 또한 자에서 하까지 들은 事項

(3) 廢棄業者에 관하여는, 다음에 의한 것으로 한다.

(中 略)

사. 제1호 자에서 하까지 들은 事項

(以下 略)

(報告의 徵收)

제39조

(中 略)

2. 使用者, 販賣業者 또는 廢棄業者는 放

射線施設을 폐지시켰을 시에는, 放射性同位元素에 의한 汚染의 除去나 그 밖에 강구한 措置를, 別記樣式 제21의 3에 의해 30일 이내에 長官에게 報告하지 않으면 안된다.

3. 使用者 販賣業者 또는 廢棄業者는 事

業所 등마다 別記樣式 제21의 4에 의한 報告書를 每年 4월 1일에서 그 이듬해의 3월 31일까지의 期間에 대하여 作成하여, 該當期間의 經過後 3개월 이내에 長官에게 提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以下 略)

樣式第二十一의 三(제39조 제2항 관계)

整理番號(注 1)

放射線 施設 廢止에 따른 措置報告書		年 月 日
科學技術庁長官		貴下
姓名(法人에 있어서는, 그 名稱 및 代表者 姓名) 印		
放射性同位元素에 의한 放射線障害防止에 관한 法律 제42조 제1항 및 同法施行規則 제39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해, 放射線施設廢止에 따 請求한 措置를 報告합니다.		
報 告 書	姓 名 또 는 名 稱	
	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	
	住 所	郵便番號() 電話番號()
許可証의 年月日 및 番號 또는 法 제3조의 2 제1항의 届出 年月日		
工場 또는 事業所 販賣所 廢棄事俺所	名 稱 所 在 地	郵便番號() 電話番號()
廢 止 한 放 射 線 施 設 名 稱		
廢 止 의 年 月 日		
廢止에 관한 許可의 申請 또는 届出 한 당시의 該當放射性施設에 保管된 放射性同位元素의 種類 및 數量		
放 射 性 同 位 元 素 에 관 한 措 置 (注 2)		
放射性同位元素에 의해 汚染된 事物에 관한 措置(注 3)		

注 1. 「整理番號」이 欄은 記載하지 말 것.

注 2. 「放射性同位元素에 관한 措置」措置를 强구한 年月日, 場所, 方法 등을 記載할 것.

注 3. 「放射性同位元素에 의해 汚染된 事物에 관한 措置」注 2의 例에 따라 記載할 것.

備考: 이 用紙의 크기는, 日本工業規格 A4로 할 것.

平成 3년 科學技術庁 告示제9호
使用場所의 一時的 變更届出에 관한 使用
目的을 提定하는 告示
放射性同位元素 등에 의한 放射線障害의

防止에 관한 法律施行令(昭和 35년 政令 제 259호) 제8조 제2항 제5호의 規定에 따라, 使用目的으로 다음과 같이 指定한다.

1.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空氣中の 有害物質 등의 質量調査

2. 螢光엑스線 分析裝置에 의한 物質中の 元素의 質量調査

3. 감마線密度計에 의한 質量의 密度調査

4. 中性子水分計에 의한 土壤中の 水分의 質量調査

平成3년 科學技術庁 告示 제10호

教育 및 訓練의 時間數를 정하는 告示

放射性同位元素 등에 의한 放射線 障害防止에 관한 法律施行規則(以下 「規則」이라 함.) 제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規定에 의해 처음 管理區域에 出入하기 前에 받아야 할 教育 및 訓練의 時間數는, 다음 表의 項目의 項에서 들은 項目에 따르며, 각각 제1항에 정한 時間數 以上으로 한다. 또한 規則제21조의 2 제1항 제3호의 規定에 의해 取扱 등 業務를 개시하기 前에 실시해야 할 教育 및 訓練의 時間數는, 다음 表의 項目의 項에 들은 項目에 따르며, 각각 제2항에 정한 時間數 이상으로 한다. 다만, 表示付 放射性同位元素 裝備機器(가스 크로마토그래프용 엘렉트론·캐프차·디텍터에 한한다.)만의 取扱 등 業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規則 제21조의 2 제1항 제3호의 規定에 의해 取扱 등 業務를 개시하기 前에 실시해야 할 教育 및 訓練의 時間數는, 다음 表의 項目의 項에 들은 項目에 따르며, 각각 제3항에 정한 時間數 以上으로 한다.

項 目	放射線의 人体에 주는影響	放射性同位元素등 또는放射線發生裝置의安全取扱	放射性同位元素및 放射線發生裝置에 의한放射性障害防止에관한 法令	放射線障 害予防規 定
제 1 項	30分	4時間	1時間	30分
제 2 項	30分	1時間 30分	30分	30分
제 3 項	10分	20分	20分	10分

平成3년 科學技術庁 告示 제11호

變更의 許可를 요하지 아니하는 輕微한 變更을 정하는 告示

放射性同位元素 등에 의한 放射線 障害防止에 관한 法律施行規則 제5조의 2 제6호에 規定된 變更許可를 요하지 아니하는 輕微한 變更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放射性同位元素 내지 放射線發生裝置의 使用時間數의 減小

2. 管理區域의 擴大 및 該當變更에 따른 管理區域의 境界에 설치하는 울타리 그 밖에 他人이 함부로 出入하지 못하게 하는 施設의 位置變更(工事を 수반하지 않는 것에 한함.)

平成3년 科學技術庁 告示 제12호

放射性同位元素 등에 의한 放射線障害의 防止에 관한 法律施行規則(昭和 35년 總理府 令 제56호) 제12조 제2항에 規定된 工場 또는 事業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學校教育法(昭和 22년 法律제26호)에 의한 學校가 設置하는 病院 내지 診療所

2. 國家가 設置하는 病院내지 診療所(厚生大臣이 設置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며, 前號에 規定한 것 이외의 것임(告示에 있어서는 改正條文 全文을 게재하여, 밑줄을 생략하였음.)